

#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2000. 12

연구위원 한 상 범  
연구위원 이 은 정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 序 言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의 진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확산과 이로 인한 세계금융의 급속한 통합 등에 의해 금융산업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변화 속에서 우리의 금융산업이 살아 남아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중에서도 특히 제도적 개혁을 포함한 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난 10월 정부가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금융기관들의 금융그룹화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및 국제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은행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경영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독과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효율적인 금융기관의 감독과 건전성규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이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국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및 감독체계는 각 국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 및 금융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여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금융그룹, 특히 금융지주회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감독과 건전성규제 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또한 최근 BIS를 비

릇한 국제금융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시점에서 이러한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및 금융감독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한상범 박사, 이은정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들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12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 목 차

---

---

<b>I. 서론</b> .....	<b>3</b>
1. 금융지주회사 건전성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 .....	3
2.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체계의 구축 .....	4
<b>II.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기준</b> .....	<b>7</b>
1. 새로운 금융그룹 감독기준의 논의 .....	7
2. 금융그룹 감독기준의 원칙 .....	8
3.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방법 .....	17
4. 연결방식에 의한 계산 예 .....	21
<b>III. 미국의 금융감독 및 건전성규제</b> .....	<b>31</b>
1. 금융감독 .....	31
2. 건전성규제 .....	69
<b>IV. 기타 국가의 금융감독 및 건전성규제</b> .....	<b>79</b>
1. 일본 .....	79
2. 영국 .....	97
3. 독일 .....	104

<b>V.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시사점</b>	<b>111</b>
1. 금융그룹의 건전성규제 및 감독 .....	111
2. 시사점 .....	116
<b>참고문헌</b> .....	<b>123</b>

## 표 목 차

---

<표 II-1> 다중계상(multiple gearing)의 예 .....	22
<표 II-2>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가상 필요자기자본 .....	24
<표 II-3> 금융지주회사의 가상 대차대조표 .....	24
<표 IV-1>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	90

## 약 어 표

---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F (Bank Insurance Fund)

BOPEC (Bank subsidiaries, Other subsidiaries, Parent company,  
Earnings, Capital adequacy)

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IA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FIRREA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FRB (Federal Reserve Board)

FRS (Federal Reserve System)

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in Japan

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in UK

GLBA (Gramm-Leach-Bliley Act)

IAIS (Insurance Accounting and Systems Association)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OCC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TS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MSB (Mutual Saving Bank)

ROCA (Risk management, Operational control, Compliance, Asset  
quality)

SAIF (Saving Association Insurance Fund)

SBD (State Banking Department)

SIB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

S & L (Savings & Loan Association)

SOSA(Strength Of Support Assessment)



## 1. 서론

---

1. 금융지주회사 건전성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
2.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체계의 구축



## I. 서론

### 1. 금융지주회사 건전성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

-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법적 도입으로 인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건전성 규제 및 감독방안이 요구됨
  - 재정경제부는 2000년 6월에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6월 15일의 일반공청회와 7월 7일의 국회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 확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10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3일에 공포되어, 공포 1개월 후인 2000년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됨
  - 미국과 일본 각각 1999년 1998년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들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중에 있음
  
-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감독 시행규정의 마련
  - 금융지주회사법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감독 및 검사주체, 인가기준 및 절차, 업무허용 범위 및 건전성 규제방법 등 구체적인 감독 및 규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

#### 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2.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체계의 구축

- 금융지주회사그룹뿐만 아니라 이업종간 금융 모·자회사들로 구성된 금융그룹의 연결감독체계의 구축이 필요
  - 국제결제은행(BIS)을 포함한 국제금융감독기구들은 1999년 2월,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겸하는 대형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준을 발표
  - 개별 재무제표에 의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개별 감독방식으로는 관계회사의 부실위험 파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가 곤란함.
  - 재벌계열 금융기업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장치가 미흡하여 그룹 대주주의 자금고화로 인한 부실우려 증대
  
- 이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의한 연결기준에 의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연결감독체계 구축이 필요
  - 개별 기관별 감독방식을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방식으로 개편
  - 연결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필요
  - 금융지주회사그룹과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검사 및 연결자료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실시 등의 감독수단 정비 필요
  - 내부거래에 의한 내부위험노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 II.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기준

---

1. 새로운 금융그룹 감독기준의 논의
2. 금융그룹 감독기준의 원칙
3.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방법
4. 연결방식에 의한 계산 예



## II.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기준

### 1. 새로운 금융그룹 감독기준의 논의

#### 가. 논의의 배경

- 국경과 업종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 복합금융기업들의 초대형 합병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제금융감독기구들은 1999년 2월 19일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겸하는 대형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준을 발표
-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는 1996년 초부터 복합 금융그룹의 감독을 위한 공동 포럼을 구성(은행, 증권, 보험감독 당국자들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감독방안에 대하여 연구
- 금융그룹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은 기존의 금융감독업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며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이업종 간 금융감독을 효율적이고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제금융감독기구는, 금융그룹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이 대형 국제 복합 금융그룹은 물론이고 소형 금융그룹까지 적용되며 또한 국내에

## 8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서만 영업을 하는 금융그룹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금융 그룹에 대한 국제적 감독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나. 금융그룹 감독기준 마련의 목적

- 금융그룹의 이질적 금융업종간 금융감독을 효율적이고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
- 금융그룹에 속한 개별 금융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감독방안 개발
- 금융감독당국이 국경과 업종을 넘어서 감독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정보를 공유하는 데 방해가 되는 법적 장애요인 또는 기타 장애요인을 조사
- 감독업무의 협조를 제고하는 방안의 검토

## 2. 금융그룹 감독기준의 원칙

### 가.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

- 의의
  -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해, 금융그룹내 금융기관간 자기자본의 이중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을 제거한 실질자기자본과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수준을 감안한 필요자기자본을 비교

-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과부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업종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그룹의 경우,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업종별 건전성 감독방식(solo supervision)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통합 감독수단임

○ 자본적정성 평가방법<sup>1)</sup>

- 구성요소 접근방법(Building block approach)
- 위험기준 합산방법(Risk-Based Aggregation Method)
- 위험기준 차감방법(Risk-Based Deduction Method)
- 총위험 차감방법(Total Deduction Method)

**나. 적격성 원칙(Fit and Proper Principles)**

○ 목적

- 감독당국이 금융그룹내 개별 금융기업의 경영 건전성의 평가 및 주요 대주주들이 개별 금융기관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평가
- 다른 금융영역의 감독당국자가 정보를 요구해올 때 감독당국간의 협의와 협조를 촉진하고 건전성규제를 받는 금융기업에 대한 정보교환의 활성화

---

1)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3절과 4절에 소개되어 있음.

## 1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 의의

- 복합 금융그룹(complex financial conglomerates) 내에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업의 경영진이 그보다 하위에 있는 규제 금융기업의 경영과 금융그룹 전체 경영목표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금융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 각 금융기업의 경영진 및 주요 대주주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이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함
-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의 경영이 금융그룹내 타 금융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요 대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 금융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자격을 평가할 때 금융그룹 전체의 조직과 경영구조를 고려해야 함

### ○ 적격성의 기본요소

- 적합성 검정(fitness test)은 경영진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완수능력에 대한 평가이고, 도덕성 검정(propriety test)은 경영자와 관리자의 도덕성 및 성실성에 대한 평가임
- 주요 주주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항목에는 사업평판, 재무상태, 주요 주주의 지분소유가 그 금융기업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들이 포함

### ○ 주주의 적격성

- 금융그룹의 대주주가 해당 그룹소속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예금자, 보험계약자

등)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감독당국은 금융그룹소속 금융기관 대주주(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등)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심사기준의 충족여부를 인가단계 및 인가후에도 계속 심사하는 체제가 필요함
- 인가 이후에 대주주가 감독당국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주주에 대해 소유지분의 매각권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경영진의 적격성과 자율성

- 감독당국은 금융그룹내 금융기관 경영진의 자격심사와 함께 해당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그룹의 모든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자격요건 및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하고, 필요시 감독당국의 개입이 가능해야 함
- 업무상 자격요건의 평가에 관해 감독당국은 학식 등 공식적인 자격요건과 경력 등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도덕성의 검증도 병행되어야 함
- 금융그룹내의 금융기관 경영진이 모회사 경영진 또는 주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의 보장장치도 필요함

## 1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다. 금융그룹 내부거래(ITEs : Intra-group Transaction and Exposures)의 규제

#### ○ 의의

-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 상호간에 보유하는 위험에 노출된 직·간접적인 채권의 규모를 말함
- 내부위험노출은 금융그룹밖의 제3자에 대한 위험노출과는 달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간에 상계되어 금융그룹의 연결대차대조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 거래조건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적 거래가 되며, 규제회피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 ○ 유형

- 금융그룹내 상호 주식보유
- 금융그룹내의 한 금융기관이 여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실행한 단기매매거래(trading operation)
- 금융그룹내 단기유동성의 중앙관리
- 금융그룹내 금융기관간 상호 보증, 대출 및 위탁
- 관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연금 관리 또는 후선업무 서비스 등)
- 대주주에의 여신공여(대출 및 위탁, 보증과 같은 부외 exposure 등)
- 고객자산을 금융그룹내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
- 금융기관간 자산 매매

- 재보험을 이용한 위험의 전이(risk transfer)
- 금융그룹내 금융기관간 제3자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거래

○ 내부거래의 규제

- 금융당국은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자회사가 은행차입 및 사채발행 등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모회사에 대출하거나, 모회사 발행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그 이전자금을 자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내부노출위험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라. 부실전염 위험(contagion risk) 감독**

○ 의의

- 금융그룹내 특정 금융기관의 문제점이 금융그룹내 여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하여 금융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임
-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실전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그룹내 금융기관이 금융그룹 소속 여타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자기자본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차단벽(firewall)의 설치 등이 필요

## 마.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정보 공유

### ○ 목적

- 금융그룹내 규제 금융기업의 감독에 참여하는 감독당국에게 감독 정보공유에 관한 원칙을 제공하고, 모든 업무영역에 적용되는 정보공유에 대한 기존의 협조체제를 향상시킴

### ○ 배경

- 기술혁신, 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국가간의 법적 장벽과 무역장벽의 제거로 인해서 복잡한 경영구조와 기업구조를 가진 세계적인 복합 금융그룹이 출현
-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기관을 거느린 복합 금융그룹이 급속도로 발전
- 업무영역과 업무지역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금융그룹내 금융기업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금융그룹내 어떤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간은 물론 단일국가내에서도 은행·증권·보험 등 각 감독당국의 감독목표, 권한 및 수단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임
- 따라서 각 감독당국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감독당국 사이의 협력라인이 개발되어야 함

### ○ 원칙

- 금융그룹내 규제 금융기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 규제 및 감독당국의 감독 목적과 방법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보가 감독당국에게 제공되어야 함

- 감독당국은 다른 감독당국과 관련된 중요 문제점 발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타 감독당국에게 제공해야 함
- 감독당국은 감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혹은 미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관련된 타 감독당국에게 제공해야 함
- 주 감독당국은 규제 금융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관련 감독당국과 함께 공유해야 함
- 금융그룹내 각 감독당국간의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협조체제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바. 감독업무의 협력

##### ○ 목적

-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목표로 금융감독당국에게 금융감독업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파악하고, 그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함

##### ○ 의의

- 복수의 감독당국에게 감독을 받는 국제적 초대형 금융그룹의 감독당국들은 국경과 업무영역을 넘어서 협조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필수불가결함

16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감독협조를 위해서는 감독당국들 중 한 감독당국을 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 조정기관은 통합감독 (consolidated supervisory)을 수행하거나, 금융그룹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독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이 됨
- 조정기관을 지정하고 조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조, 개별감독당국의 법적 권한과 입법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개별감독당국의 책임, 감독당국이 사용하는 감독기법과 보완조치, 국경과 업무영역을 넘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능력,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체계와 사업체계, 개별 감독당국의 금융그룹 정보에 대한 사용가능성 등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3.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방법

#### 가. 구성요소접근법(building block approach)

##### ○ 의의

- 금융그룹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그룹 전체의 연결계정상의 자기자본과 그룹내 개별 금융기업의 필요자기자본의 합을 비교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임
- 자본적정성의 평가대상은 금융그룹 전체임
- 이 방식은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룹내의 상호출자금과 내부거래자산이 제거되어, 규제를 위해 필요한 업종 부문별 필요자기자본이 개별기업 기준에서 작성된 규모와 다를 수 있음

##### ○ 절차

- 연결대차대조표를 주요 업종별(은행, 증권, 보험)로 분류
- 각 업종별로 필요자기자본을 계산
- 자회사들이 실제 보유하는 자기자본에서 각각의 필요자기자본을 차감하여 자본과부족을 계산
- 앞에서 구한 각 자회사들의 필요자기자본을 합하고 이를 그룹전체의 실제자기자본과 비교하여 그룹전체의 자본과부족을 계산

**나. 수정된 구성요소접근법(modified building block approach)**

○ 의의

- 모회사의 필요자기자본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의 자본건전성 규제 대상 자회사들의 필요자기자본과 규제대상이 아닌 자회사들의 필요자기자본을 차감
- 위에서 조정된 필요자기자본을 모회사의 재무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자기자본과 비교
- 이 방법은 그룹내에서 모회사의 재무활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경우에 적합함

**다. 위험기준 합산방법(risk-based aggregation method)**

○ 의의

- 구성요소접근법(building block approach)과 비슷하나 서로 연결되지 않은 재무제표만을 이용
- 자본적정성의 평가대상은 금융그룹 전체임
- 연결된 재무제표의 사용이 불가능(서로 연결되지 않은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만이 사용 가능한 경우)하거나 그룹내 금융기업들간의 상호위험을 적절히 상계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됨

○ 절차

- 모회사와 금융자회사의 필요자기자본을 합산
- 모회사와 금융자회사가 실제 보유한 자기자본을 합함
- 자본의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의 실제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상호출자분을 위에서 구한 값에서 차감. 즉, 실제 자기자본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기자본을 더한 후 자회사 출자액을 차감한 값임
- 계산된 금융그룹의 필요자기자본과 그룹전체의 실제자기자본합계를 비교함으로써 자본과부족을 계산

**라. 위험기준 차감방법 (risk-based deduction method)**

○ 의의

- 금융모회사의 관점에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본적정성의 평가대상은 금융그룹 전체가 아니라 금융 모회사임
- 금융그룹내 개별 금융기업의 연결되지 않은 각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건전성규제를 받는 모회사의 순자기자본을 구한 후, 이를 모회사의 필요자기자본과 비교하여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분석하는 방법임

○ 절차

- 금융모회사의 자본계정을 기준으로 계산
- 모회사의 자기자본에서 금융자회사에 지분 참여한 금액을 차감
- 차감조정된 자본에 금융자회사의 자본과부족을 합산

## 2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조정된 자본에서 금융모회사의 개별재무제표로부터 구한 필요자기자본을 차감
- 위에서 구한 모회사의 순자기자본이 그룹전체의 관점에서 구한 필요자기자본의 과부족임

### 마. 총위험 차감방법(total deduction method)

#### ○ 의의

- 그룹전체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아니라, 모기업의 자본적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중계산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임
- 자본적정성의 평가대상은 금융그룹 전체가 아닌 금융모회사임
- 이 방법은 금융모회사 수준에서 잠재된 이중계산을 재빨리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위험기준 차감방법(risk-based deduction method)과 거의 동일하나 자회사 자기자본 초과액은 실제 자기자본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 이 방식은 실제 자기자본을 산출하기 위해 자본초과액은 반영하지 않고 자본부족액만 차감하기 때문에 자본과부족 처리가 비일관적임

#### ○ 절차

- 금융자회사에 투입된 자본을 모회사의 자기 자본에서 모두 차감
- 개별 자회사의 자기자본의 부족분만을 모두 고려함

- 조정된 자본을 모회사의 필요자기자본과 비교하여 그룹전체의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이용

#### 4. 연결방식에 의한 계산 예2)

##### 가. 이중 계상 및 다중 계상(multiple gearing)의 문제

- 증권회사에 100% 출자한 은행에 대해 100% 출자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모회사로서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
  - <표 II-1>에 가상의 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가 나타나 있는데, 모회사인 보험회사 M은 자회사인 은행 S1에 500의 자본을 100% 출자하고 있고, 다시 이 은행은 증권회사 S2에 250의 자본을 100% 출자하고 있음
- 이 예의 경우,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측정하는데 금융그룹의 연결된 재무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한 필요자기자본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모회사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일정부분(은행 S1에 투자한 500)은 모회사와 은행 S1에 각각 두 번 계산된 것임
  - 또한, 이미 이중 계산된 은행 S1이 증권회사 S2에 투자한 금액(250)은 세 번 계산된 것으로 다중 계상이 초래되며, 이러한 중복 계상은 그룹 전체의 자기자본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유발

---

2) BIS(1999)의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에서 든 예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할 것.

<표 II-1> 다중계상(multiple gearing)의 예

보험회사 M (모회사)			
자산		부채	
투자	5,000	자본	1,000
은행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장부가치	500	지급준비금	500
합계	5,500	총당금	4,000
필요 지불능력	800	합계	5,500

은행 S1 (자회사)			
자산		부채	
대출	8,750	자본	500
증권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장부가치	250	지급준비금	400
합계	9,000	기타부채	8,100
필요 지불능력	800	합계	9,000

증권회사 S2 (자회사)			
자산		부채	
투자	4,000	자본	250
		지급준비금	250
합계	4,000	기타부채	3,500
필요 지불능력	400	합계	4,000

- 액면상으로 이 그룹은 총필요 지불능력 2,000에 대한 총 자기자본 및 지급준비금은 2,900임
  - 그러나, 만약 다중 계상을 고려하여 재계산을 한다면, 조정후 자기자본 및 지급준비금은  $2,150(=2,900-500-250)$ 으로 감소함

#### 나. 금융지주회사의 적정자본 규모의 계산 예

- 개별기업기준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는 2개의 규제대상 자회사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1개의 비규제회사에 100% 출자한 비규제지주회사를 가정
  - 규제대상 자회사의 개별기업기준 필요자기자본을 <표 II-2>에서와 같이 가정함
  -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가상의 금융그룹의 대차대조표는 <표 II-3>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함
- 구성요소 접근방식에 의한 평가
  -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결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융그룹 전체의 자기자본과 금융그룹내 각 부문별 필요자기자본의 합산액을 비교하여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을 분석
  - 개별기업기준 필요자기자본은 S1 100, S2 300, S3 150으로 총 550이며 연결자기자본은  $400(300+100)$ 임
  - 이 그룹의 유동성 부족액(solvency deficit)은  $150(550-400)$ 임

2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표 II-2>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가상 필요자기자본

	필요자기자본(A)	실제자기자본(B)	자본과부족(B-A)
은행 S1	100	800	700
보험회사 S2	300	300	0
리스회사 S3	150	100	(50)

<표 II-3> 금융지주회사그룹의 가상 대차대조표

비규제 지주회사 M			
자산		부채	
출자금 장부가치			
증권자회사 B1	800	자본	300
보험자회사 B2	200	기타부채(장기대출)	800
리스자회사 B3	100		
합계	1,100	합계	1,100

은행 S1 (자회사)			
자산		부채	
대출	900	자본	800
기타자산	400	기타부채	500
합계	1,300	합계	1,300

<표 II-3 계속>

보험회사 S2 (자회사)			
자산		부채	
투자	7,000	자본	200
		지급준비금	100
		충당금	6,700
합계	7,000	합계	7,000

비규제 리스회사 S3 (자회사)			
자산		부채	
리스	2,000	자본	100
		기타부채	1,900
합계	2,000	합계	2,000

연결그룹			
자산		부채	
대출	900	자본	300
기타은행자산	400	지급준비금	100
보험투자	7,000	기타은행부채	3,200
리스	2,000	충당금	6,700
합계	10,300	합계	10,300

○ 위험기준 합산방식에 의한 평가

- 모회사와 규제대상 자회사 및 비규제 자회사의 자기자본을 합산하고 이를 그룹의 상호출자자본을 차감한 자본과 비교하여 그룹의 자기자본 적정성을 평가

26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개별기업기준 필요 자기자본의 합계 550과 그룹의 자본[300(M) + 800(S1) + 300(S2) + 100(S3) - 1,100(participations) = 400] 과 비교

— 이 그룹의 유동성 부족액은 150임

○ 위험기준 차감방식에 의한 평가

- 모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차감한 후 자회사의 자기자본과부족액을 반영하여 모회사의 실제자기자본과 모회사의 필요자기자본을 비교함으로써 모회사에 대해서만 자본적정성 여부를 평가

○ 비규제지주회사의 경우 총차감방식에 의한 그룹의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는 불가능함

○ 두 개의 규제대상 자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또는 부문별로 필요 지급 능력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그룹전체적으로는 불충분함

- 이는 모회사가 부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과도한 레버리지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자본부족 비규제 자회사가 존재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그룹의 자본부족은 규제대상 자회사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자본부족은 금융그룹 단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자본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측정 가능함

### Ⅲ. 미국의 금융감독 및 건전성규제

---

1. 금융감독

2. 건전성규제



### Ⅲ. 미국의 금융감독 및 건전성규제

#### 1. 금융감독

- 1999년 금융개혁법(Gramm-Leach-Bliley Act)의 성립과 함께 미국의 금융감독 체계가 새롭게 정립됨
    - 1933년 글래스 스티걸법의 제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 분리와 함께 미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정립되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감독체계가 요구됨
  
  -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에 대한 금융감독
    -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권을 가짐
    - 연방준비이사회는 금융자회사<sup>3)</sup>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umbrella supervisor로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을 가짐
    - 연방준비이사회의 감독 목적
      -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지주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연결기준에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 3) 금융지주회사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의결권부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사선임 또는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하며, 실제로는 대부분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가까이 소유하고 있음

### 3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따라서, 연방준비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그룹전체의 위험관리 절차 및 자본 적정성 등을 규제하는데 감독의 중점을 둠
  - 연방준비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와 구조에 따라 차이를 둠
-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금융감독
- 재무성의 통화감독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국법은행을 감독하고 재무건전성을 규제함
- 금융지주회사의 예금수신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 연방 및 각 주의 은행 감독기관 또는 저축금융기관 감독기관이(primary bank or thrift supervisor) 감독하도록 함
- 증권·보험과 같은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감독
- 원칙적으로 각 기능별 감독기관(functional regulators)에 의해 규제 및 감독을 받음
  -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업자 등의 증권업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규제를 받음
  - 보험업무에 대해서는 각 주의 보험당국이 규제
    - 주 보험감독당국과 연방당국간에는 상호협의(consultation)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주 보험감독당국 및 연방감독당국은 상호 의견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

— 저축금융기관 지주회사(thrift holding company)<sup>4)</sup>의 경우에는 저축금융기관 감독청(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이 주된 감독 권한을 가짐

- 그러나, 저축은행 지주회사는 1999년 5월부터는 인가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저축은행 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만이 이를 인수할 수 있고 일반기업의 인수는 불가능함

○ 연방준비이사회가 규제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

— 자회사가 업무제휴 예금수신 금융기관에 현저한 위험(material risk)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 연방준비이사회가 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를 심사한 후라도, 그 자회사에 대한 재무·영업 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당해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연방준비이사회가 타 감독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당해 자회사가 은행지주회사법 및 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예금수신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확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자회사에 대한 조사 이전에 연방준비이사회는 먼저 해당 기능별 감독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연방준비이사회는 해당 기능별 감독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조치를 취함

---

4) 단일 저축금융기관 지주회사(unitary thrift holding company)는 저축금융기관을 1개만 보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함

## 3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해당 은행, 저축금융기관 및 기능별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회사에 대해서, 연방준비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전체적인 재무조건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 자회사로부터 직접 정보 획득을 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필요하다면 연방준비이사회는 자회사의 재무·영업 위험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음

### ○ 현행 은행감독관청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 FRS)
  - 금융(은행)지주회사와 그 비은행자회사를 규제·감독하며,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한 주법은행의 감독을 주관하고,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연방기관임
  - 즉, 연방준비제도가맹주법은행과 그 금융(은행)지주회사, 국법은행의 금융(은행)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비가맹주법은행의 금융(은행)지주회사를 규제·감독
  - FR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7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 FRB)이고, 전국 25개 지역에 연방준비은행이 있음
  - FRB의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가 14년이며, 이사 중에 1명은 대통령에 의해 임기 4년의 의장으로 임명되며 연임이 가능함

- 통화감독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OCC)
  - 국법은행, 즉 연방이 면허를 부여한 은행을 규제·감독하며, 또한 연방이 면허를 준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주관함
  - 재무성 산하기관이며, 임기 5년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함
  
-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
  - 연방예금보험제도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연방준비제도에는 가맹되지 않은 주법은행의 감독
  - 연방예금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주법 면허의 저축금융기관에 대한 주관 감독기관임
  - 연방예금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 : BIF)과 저축금융기관예금보험기금(Saving Association Insurance Fund : SAIF)의 관리를 담당
  - 파산한 은행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과 파산금융기관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
  - 이사회는 이사 5명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6년이며, 통화감독청과 저축금융기관감독청의 장관은 당연직 이사임
  
- 저축금융기관감독청(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 OTS)
  - 주법 및 국법 면허를 받고 연방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모든 저축금융기관과 그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주관함

## 3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저축금융기관은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 Association : S & L)과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 Bank : MSB)로 나뉘어짐
- 재무성 산하기관이며, 임기 5년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함

### — 각 주의 은행감독국(State Banking Department : SBD)

- 연방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연방준비제도에도 가맹하지 않은 주법은행의 감독

## 가. 설립규제

### 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규제

#### ○ 금융지주회사 설립 요건 (interim rule)

-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외국은행은 자본금 요건(well capitalized), 경영상태 요건(well managed) 및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함
- 금융지주회사 설립 신고 후 30일 이내에 연방준비이사회의 반대가 없으면 금융지주회사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 — 설립요건

##### ① 자본금 요건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모든 은행자회사들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

며, 다음의 세 가지 정량적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 비율 5% 이상
- ㉡ 위험가중자산 (risk-based assets) 대비 기본자본 비율 6%이상
- ㉢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Tier 1 + Tier 2) 비율 10% 이상

② 경영상태 요건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모든 은행자회사들에 대해 개별 적용되며,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 CAMELS 종합등급 2등급 이상
- ㉡ CAMELS 중 M(Management quality)부문 2등급 이상

- CAMELS란, Capital adequacy(자본적정성), Asset quality(자산 건전성), Management(경영관리능력), Earnings(수익성), Liquidity(유동성), Sensitivity to Market Risks(시장위험에 대한 감응도)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은행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③ CRA 요건

- 부보된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CRA 검사결과 “양호(satisfactory) 등급” 이상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후 설립요건 미달시의 조치

- 은행지주회사법 제4조(m)항의 규정을 적용
- 연방준비이사회의 요건 미달내용 서면 통지

36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연방준비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 신고 후 자회사 중 어느 하나가 자본적정성 및 경영상태 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동 내용을 당해 지주회사에 서면 통지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중 어느 하나가 동 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동 내용을 연방준비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함

— 요건준수약정서 제출

- 금융지주회사는 연방준비이사회로부터 상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요건 미달내용의 준수계획을 담은 약정서를 제출

— 요건 미달 기간 중 조치

- 연방준비이사회는 요건 미달기간중 (요건준수약정서 이행 기간 중)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영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180일 이내에 요건 미충족시 조치

- 연방준비이사회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방준비이사회가 정하는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자회사인 예금기관의 지배권을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허용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위 처분에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연방준비이사회와의 사전 승인사항

- 회사가 금융(은행)지주회사가 되려는 경우,
- 은행이 금융(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려는 경우,

- 금융(은행)지주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비은행자회사가 은행자산의 대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은행)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연방준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업이외의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금융개혁법 하에서 증권·보험 등 비은행업무를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새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 2) 국법은행의 자회사 설립규제

- 국법은행의 자회사 인가요건이 금융개혁법의 성립으로 완화됨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법은행이 보험인수업무, 보험 포트폴리오 투자업무, 부동산 개발투자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새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됨.
  - 금융자회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법은행은 통화감독청(OCC)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국법은행의 자회사 인가조건
    - 모든 금융자회사의 연결 총자산이 모은행의 연결기준 총자산의 45% 또는 500억달러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38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국법은행과 계열 예금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충실(well capitalized)하고 경영관리가 양호(well managed)할 것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요건 및 경영상태 요건과 동일)
- 연결총자산 기준 상위 50위에 드는 은행은 single A 이상의 채권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할 것
- 상위 50위와 100위 사이에 속하는 은행도 같은 취지의 기준 즉, single A와 동등 이상이거나 재무부와 연방준비이사회가 설정하는 기준 이상이 적용됨

○ 은행에 대한 설립규제는 연방정부에서 허가를 받는 국법인가(federal-chartered)은행과 주정부에 의해 허가를 받는 주법인가(state-chartered)은행이 병존하는 이원적 은행설립 인가제도(dual banking system)를 갖추고 있음

- 국법은행은 재무성의 통화감독청(OCC)이 연방허가를 부여하고 주된 감독권한을 가지며, 연방준비제도(FRS)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3) 주법은행의 자회사 설립규제

○ 연방준비제도(FRS) 가맹 주법은행에 대해서도 국법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자회사를 직접 취득하여 증권인수, 보험판매 등 비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Regulation H 개정)

- 단,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에 허용된 업무중에서 보험인수업무, 연금업무,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무, 머천트뱅크를 주업무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

- 국법은행의 금융자회사 설립운영기준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주법은행의 금융자회사 운영기준을 마련
- 금융자회사를 취득하거나 금융자회사를 통해 새로운 업무를 취득하고자 하는 연방준비제도(FRS) 가맹 주법은행은 사전에 서면신고서를 연방준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 후 별도의 통보없이 15일이 경과한 경우 인가된 것으로 간주
- 주법은행은 해당 주은행법에 의거하여 주정부 은행국이 인가하며 주법은행의 연방준비제도(FRS) 및 연방예금보험제도 가입의무 여부는 각 주법의 규정에 따라 다름
  - 연방준비제도(FRS)에 가맹한 주법은행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주감독당국과 함께 주된 감독권한을 가지며 연방준비제도(FRS)에 가맹하지 않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감독당국과 함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주된 감독권한을 가짐
  - 주법은행은 각각 주법으로 규정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업무가 영위 가능함
  - 연방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주법은행 및 자회사의 보험업무에 대해서는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에 의해 현재 국법은행에 허용되지 않는 보험인수업무는 영위할 수 없음

#### 4) 외국금융회사 설립규제

##### ○ 외국금융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Regulation Y 개정)

- 외국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설립 신고 후 30일 이내에 연방준비이사회에 반대가 없으면 영업 개시가 가

## 4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능함

-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시 연방준비이사회는 외국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자본 요건 및 경영상태 요건을 적용
- 외국금융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신고시 자본충실도 및 경영상태요건 달성여부 확인대상이 되는 관련회사의 범위는, 당해 금융회사, 미국내 지점, 여신전문 자회사 및 미국내의 저축기관자회사 등임
  - 즉,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내 모든 예금금융 자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상태 요건을 달성토록 명시하고 있음
- 외국은행 지점은 연방준비이사회와 사전 승인을 거쳐 통화감독청 또는 州정부 은행국이 인가

### 나. 업무영역의 규제

- 1999년 금융개혁법(The Gramm-Leach-Bliley Act)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권간 업무장벽이 크게 철폐됨
  - 은행의 증권자회사 소유 금지조항(은행법 제20조) 및 은행 임직원의 증권사 겸임 금지조항(은행법 제32조)을 폐지함으로써 은행·증권·보험 상호간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겸업 허용
  - 그러나, 은행 및 증권사의 in-house 겸영 금지조항(은행법 제16조 및 제21조)은 여전히 유효
  - 지금까지 제한적이거나 은행에서 취급하여 오던 증권업무 중에서 다음 업무를 제외하고는 금융개혁법 제정 후 18개월 이전에 모두 증권자회사로 이관하여 증권거래위원회에 broker-dealer로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함

- 증권신탁 및 보관, 보호예수, CP·국채·지방채 등의 인수 및 매매
- sweep계좌(CMA 등 종합계좌), 종업원복지제도 등의 주식매입 계획, 일정조건하에서의 사모
- 은행의 점포내외에서 증권회사가 증권브로커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계약
- 예금증서, 신용장 등 은행상품(identified banking products)의 매매
- 신탁의 수탁자로서 행하는 증권거래
- 은행의 투자자에 대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 및 판매
- 소매고객에의 판매를 제외한 credit swap 및 equity swap 등 파생상품업무
- 새로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준비이사회의 견해가 상이할 경우에는 Washington D. C. 연방항소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에 따름

— 은행 및 은행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음

- 현재 title insurance<sup>5)</sup>의 인수 또는 판매를 영위하고 있지 않는 국법은행이 새롭게 동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함
- 판매업무에 대하여 주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법은행은 주법은행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인정

---

5) 부동산 물권이전과 관련하여 과실·하자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

## 4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국법은행 산하 자회사는 title insurance를 포함하여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만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는 title insurance를 포함한 모든 보험의 인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 은행의 투자회사 업무관련

-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뮤추얼펀드 업무를 영위할 경우에 이익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 계열 뮤추얼펀드 업무에 관한 보관업무,
- 계열 뮤추얼펀드 업무에 대한 대출,
- 은행이 판매하는 뮤추얼펀드 업무상품의 공시에 관하여 증권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또한, 은행이 뮤추얼펀드 업무에 투자조언을 할 경우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은행지주회사법(The Bank Holding Company Act) 제4조를 개정하여, 모든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근거조항(제k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은행지주회사와 별도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간 업무제휴(affiliation)를 통하여 본질적 금융업무 및 금융 부수업무(incidental to such financial activities), 금융업무에 보충적이면서 예금기관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

할 수 있음

— 본질적 금융업무

- 대출, 환, 대체, 투자업무,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호예수업무
- 손실·손해·질병·무능력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보증 또는 배상업무, 연금 지급업무 및 이를 본인·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행하는 업무
- 투자회사법 제3조에 의한 투자회사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금융·투자·경제자문업무
- 은행이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산 pool에서 interest를 나타내는 증서를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업무
- 유가증권 인수, 판매 또는 시장조성 업무
- 종합금융업무 (merchant banking)<sup>6)</sup>
- 기타 연방준비이사회가 은행업무 또는 은행을 경영하고 지배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업무

— 금융업무와 보완적 업무의 범위는 연방준비이사회가 결정

- 금융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이사회의 재무성·통화감독청에 대한 통지의무 및 재무성·통화감독청의 거부권·제안권 등을 가짐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은행의 비은행업무 겸업 및

---

6) 종합금융(merchant banking)업무는 금융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 및 보험자회사 등을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어음 등 증권 및 partnership지분, 신탁증서, 기타 지분 등을 인수·매입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각하는 등 투자를 행하는 업무를 지칭

#### 4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증권·보험사의 은행업무 취급은 허용하나,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가 여타 금융업종의 회사를 직접 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불허함

- 우량 국법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하여 금융업무 영위 가능
  - 보험인수업무, 보험 포트폴리오 투자업무, 부동산개발투자업무는 제외되지만, 종합금융(merchant banking)업무에 대해서는 본법의 입법일로부터 5년후에 인가 받아 취급가능
  - 또한 국법은행은 지방채 등의 인수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국법은행의 경우 금융업무의 범위는 재무성·통화감독청(OCC)이 결정하고, 연방준비이사회는 거부권·제안권 등을 가짐

○ 투자은행업무를 위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투자은행 지주회사(investment bank holding company)의 설립이 가능

- 기존의 증권회사(broker-dealer firm) 등이 예금은행업무나 보험업무는 영위하지 않고 투자은행업무에 주력하면서 신탁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을 자회사로 취득하는 등 영업범위를 확장시켜 가고자 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대신 투자은행지주회사로 설립할 수 있음
-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를 포괄적 감독기관(umbrella supervisor)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감독받기를 원하는 투자은행 지주회사는 피감독 의향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제출 후 45

일후부터 감독을 받게됨

- 외국은행도 미국 은행과 동일하게 본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 업무를 신규로 영위할 수 있음
  
- 비금융업무의 영위 등과 관련된 인가
  - 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 금융업무 또는 부수적 업무로부터 산출되는 연간수익이 지주회사 및 그의 모든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연간 총수익의 8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함
  -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합병·신설합병 기타 영업결합의 방법을 통해 연방준비이사회가 본질적 금융업무 또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인수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비은행업무를 계속 영위하거나 이러한 비은행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1999년 9월 30일 당시, 금융지주회사가 합법적으로 업무를 영위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을 것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무만을 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보유대상회사가 1999년 9월 30일 당시 수행하고 있었던 비은행 업무와 동일한 업무 및 은행지주회사법에 의거 허용되는 여타 업무만을 영위하고 있을 것
  - 단, 방송회사 및 1998년 1월 1일 이후로 보험회사의 지배하에 있

46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5대 미국내 은행지주회사에 의해 인수되거나 그들의 계열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됨

- 그러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로부터 나오는 연간수익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예금기관자회사의 수익은 제외)의 총연간수익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예금기관은 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와 연방준비법 제23A조(b)항(7)호에 규정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
- 상기 예외 조항에 따라 비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비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Gramm-Leach-Bliley법 시행일로부터 10년내에 비은행업무를 정리하거나 또는 비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하여야 하며, 공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연방준비이사회는 5년이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연방준비이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음 (Regulation Y)

- 신탁, 리스, 투자 또는 재무상담, 금융·경제관련 정보처리
- 소비자금융회사업무

7) 다음의 거래를 말함.

- 계열사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의 구입 또는 투자
- 계열사로부터 자산의 구입(환매조건부 구입 포함). 다만, 연방준비이사회가 특별히 허용한 자산은 제외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대출 또는 신용공여의 담보로 취득
- 계열사를 위한 보증, 인수 등

- 금융상품 및 금융관련자료의 배송
- 타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 여행자수표 발행 및 판매
- 부동산, 유가증권 감정
- 국채 및 자금시장상품의 인수 및 자기매매, 외환거래자문
-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한 투자자문
- 개인경영문제에 대한 고객상담
- 채권추심 등
  -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은행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변업무와 부수업무로 제한하고, 업무 범위에 대한 결정권을 연방준비이사회에 부여

#### 다. 소유규제

- 은행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주식을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방준비이사회(F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일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 비상장 은행 또는 금융(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48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은행지주회사는 비은행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임
  - 채무변제조로 취득한 주식 : 2년 이내에 처분되어야 하나 연방준비이사회가 공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범위내에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자회사에 대해 검사권을 가진 연방감독기관이나 주감독기관이 자회사에 대해 내린 주식처분명령에 의거 은행지주회사가 그 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주식의 취득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함
  - 선의의 수탁자로서 취득한 주식
  - 전국은행협회가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의 5%미만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면서 유가증권투자업무만을 영위하는 투자회사의 주식
  - 연방준비이사회가 은행업무 또는 은행경영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하였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 외국회사의 소유제한
  - 미국 내에서 은행·증권·보험업 또는 기타 연방준비이사회가 정하는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 라. 자금조달 및 운용

- 은행지주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단기부채, 장기부채, 주식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부채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복잡성 정도는 지주회사의 규모와 재무상태에 크게 의존함
  - 소규모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방법에 제한이 있으며, 부채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시 지주회사의 소유주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
  - 중간규모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공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CP시장에서 기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대규모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와 주식발행시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금조달의 방법이 다양하며, 부채를 통한 조달도 가능함
  
- 은행지주회사의 자금조달과 유동성
  - 자금조달과 유동성
    -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의 주요 목적은 자회사에 자본투자를 지원하고 자본금과 장기펀드로 구성된 장기자산을 구성하는 것임
    - 장기자금조달은 안정적인 자금의 확보와 동시에 유동성위험을 줄일 수 있고,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을 믿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유인할 수 있음
    - 장기자금조달은 장기부채증권, 전환가능한 무담보사채, 하위 부채, 주식의 형태를 띠

## 5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 감독사항

-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 자회사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부채를 은행의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함
  - 은행지주회사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본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자금조달계획, 자금조달 방침 등이 조직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비추어 세밀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마. 자회사와의 관계

- 은행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에 대해 은행취급 비적격증권(ineligible securities)<sup>8)</sup>의 인수 및 딜링업무를 1987년에 최초로 허용하였으며, 은행과 증권자회사, 또는 은행과 증권자회사의 고객간 거래에 대해 차단벽 설치
- 1999년 비적격증권의 인수 및 딜링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자회사 총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

---

8) 은행의 인수가 허용되지 않은 주식이나 회사채 등

- 은행과 증권자회사 또는 은행과 증권자회사의 고객간의 거래에 대해 자기자본 규제, 증권자회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증권자회사 업무의 독립성 유지의무, 공시의무, 증권자회사를 위한 은행의 마케팅활동 금지, 은행의 투자자문활동 규제, 증권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자산매매 제한, 고객에 대한 정보교환 금지, 보고의무, 업무이관 및 조직변경 금지, 연방준비이사회의 사전인가 필요 등의 총 28개 항목에 달하는 차단벽을 설치
  - 1997년 10월31일부터 규제완화 및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위의 28개 방화벽 항목을 8개 항목으로 축소함
- 금융지주회사에 재무위험 및 영업위험을 통제하고, 관련회사의 위험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부과
- 거래한도 규제
- 은행 및 그 자회사, 또는 개별 관련회사간의 총규제대상거래(covered transaction)<sup>9)</sup>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10% 이내
  - 은행 등과 전체 관련회사간의 총규제대상거래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의 법적 하한은 25%이나 통상 100%를 소유하고 있음

---

9) 총규제대상거래(covered transaction)란 관련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 관련회사 발행 증권의 매입 또는 투자, 제매입계약 자산을 포함하여 관련회사로부터의 자산 매입, 관련회사발행 증권의 지급승락, 관련회사를 대신한 보증, 인수 또는 신용장의 발행 등을 의미함.

## 5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5% 이상 25% 미만 소유시에는 자회사 여부를 연방준비이사회가 판단
-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연방준비이사회가 결정하여 자회사 여부를 판단

### 바. 은행검사와 그 평가체계

#### 1) 의의

- 금융기관의 시스템, 내부관리, 보고의 신뢰성에 대해서 검사
- 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감독당국은 검사 및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운영함
-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상황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방식으로 평가함

#### 2) 검사의 대상

- 연방예금보험보험공사개선법(FDICIA)에 의해, 미국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연방 은행감독관청의 검사를 연1회 받아야 함.
  - 총자산액 2억 5천만달러 미만 규모인 경우, 다음의 기준 등을 만족하게 되면 검사기간이 연1회에서 1년 6개월에 1회로 완화
    - 검사성적이 종합 5단계 중 상위 2단계 안에 포함되는 경우

- 자기자본 우량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경영관리가 견실한 경우 등
- 검사는 당해 금융기관의 주관 감독관청에서 행함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연방예금보험기금(BIF)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 은행들에 대하여 보완검사(backup examination)를 실시하기도 함

○ 일반출입검사의 실시

-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출입검사는 금융기관의 영업실태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사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함
- 금융시스템, 내부통제, 보고의 신뢰성에 관하여 검사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림
- 금융기관 외부로부터의 감시(offside monitoring)와 분석을 통해 발견된 변화와 이상징후에 관해 정밀검사를 실시

3) CAMELS 검사제도에 의한 은행과 저축금융기관의 검사

○ 의의

-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평의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 FFIEC)는 79년 이래로 사용하여오던 은행검사평가기준인 "CAMEL"에 97년 1월부터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를 추가한 "CAMELS제도"를 새로운 은행경영실태 평가수단으로 이용

5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CAMELS 평가는 은행의 재무상태, 은행법 및 규제 준수, 그리고 전반적인 영업의 건전성을 다음의 6개 분야로 평가함
  -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s)
- 각 평가부문별 평가등급은 5개의 등급으로 표시되며, 경영성과가 가장 우수한 수준인 1등급부터 가장 위험한 5등급까지 평가됨.
  - 6개 분야의 개별 CAMELS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인 종합평가등급은 할당된 종합평가등급으로 요약됨

○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평가

- 평가부문은 다음과 같음
  - 자본의 질(quality) 및 추가자본 관리 능력
  - 부실자산의 특성, 추세 및 양 그리고 대출, 임대 및 기타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 대차대조표 구성
  - 부외 거래 행위에 의한 위험 노출
  - 금융기관의 성장, 향후 계획 및 전망
- 감독당국은 기본자본, 총자본, 그리고 위험가중자산의 규모와 더불어 다음의 3개 비율에 대한 최소기준을 규정
  - 기본자본기준 자본금비율(기본자본/위험가중자산) : 4%
  - 총자본기준 자본금비율 (총자본/위험가중자산) : 8%
  - 기본자본 레버리지비율 (기본자본/평균총자산) : 3%

○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평가

- 자산의 전반적인 정성적 평가는 여신, 유가증권, 부외대차대조표 항목, 기타 건전성 점검대상 자산의 건전성분류에 기초함
- 관련비율

- 총고정이하자산비율(total classified asset ratio)

$$= \text{총고정이하분류자산} / (\text{기본자본} + \text{대손충당금})$$

- 총고정이하분류자산(total classified assets)비율은 기본자본(Tier 1)과 대손충당금 합계에 대한 총고정이하분류자산의 비율로서 자산의 질적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임

- 가중 고정이하자산비율(weighted classified asset ratio)

$$= (\text{고정} * 20\% + \text{회수의문} * 50\% + \text{추정손실} * 100\%) / (\text{기본자본} + \text{대손충당금})$$

○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평가

- 감독당국은 경영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업무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며, 일상적인 영업위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지를 평가해야 함
-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의 자산규모, 복잡성, 그리고 위험구조에 적합한 경영관리 및 리스크 감시 시스템의 정확성, 신속성 및 효율성
- 변화하는 영업환경 또는 새로운 상품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위

56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험에 대한 대처능력

- 회계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
- 은행관련 규제 및 법 준수
- 내부거래의 경향 및 배상의 합리성
-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 및 리스크 관리

— 경영관리능력 평가등급을 산출하는 공식은 없으나, 연방준비이사회의 SR 95-51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직의 재무상태와 위험 관리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수익성(Earnings) 평가

— 수익성 평가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평가함

- 손실을 감당하고 보유수익에서 적정 자기자본의 대비 능력
- 수익의 정도
- 수익의 질, 구성 및 수익원천
- 예산시스템, 예측과정 및 전반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의 적절성
- 이자율, 외국환, 가격 위험과 같은 시장위험에의 노출 정도
- 영업비용
- 동료그룹과의 비교

— 수익성 평가시 가장 중요한 비율은 은행의 평균자산수익률 (Return On Average Assets : ROAA)임

- 평균자산수익률 = 당기순이익(annualized net income)/평균자산 (average assets)

- 보통 평균자산수익률이 1.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며 은행에 대한 최소 수용수준은 0.6%임

○ 유동성(Liquidity) 평가

-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산을 현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
- 유동성을 평가함에 있어 사용되는 유동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단기투자/총자산 (short-term investments/total assets)
  - 순대출/총자산 (net loans and leases/total assets)
  - 핵심예금/총자산 (core deposits/total assets)
  - 비핵심 순자금의 의존정도 (net non-core funding dependence)
  - 단기 비핵심 순자금의 의존정도 (net short-term non-core funding dependence)
  - 단기투자/단기 비핵심 자금 (short term investments/short term non-core funding)

○ 시장민감도(Sensitivity) 평가

-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변화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순이익 및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의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
  - 시장위험의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 비거래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위험의 특성 및 복잡성

## 58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거래 및 외환 영업에서 발생하는 시장 위험의 특성 및 복잡성
- 시장민감도의 평가 및 등급은 이자율위험 노출의 정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경영진이 이자율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성됨
- 정량적 측면에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된 값, 시뮬레이션 및 듀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
- 정성적 측면에서는 이사회와 임원의 감독 및 정책절차, 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그리고 종합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

### 4)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 ○ 검사주체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연방준비제도(FRS)와 저축금융기관 감독청(OTS)이 담당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은행의 검사와는 달리 검사의 초점이 은행지주회사의 경영 유지능력에 맞추어지며,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 은행자회사, 비은행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영향 등을 판정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 FRS와 OTS의 은행지주회사 검사 가이드라인에 의한 검사개요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자회사, 비은행자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검사
- 관계회사간의 거래관계 조사
- 해당회사들과 경영진의 현재의 경영성적에 대한 평가

— 해당회사들이 준거법규들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

- 은행지주회사의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5가지 항목에 주안점을 두어 이루어짐
  - 은행자회사(B), 비은행자회사(O), 모회사(P), 수익성(E), 자본적정성(C)으로 구성된 항목에 의해 평가되는데, 이를 BOPEC 평가제도라고 함
  - 은행과 저축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CAMELS 평가제도와 유사하게 5단계로 등급을 매기며, 별도로 경영진에 대해서는 양호(satisfactory), 가(fair), 불가(unsatisfactory)의 등급을 매김

### 5) BOPEC 평가제도

- 연방준비이사회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검사를 위해 “BOPEC제도”를 마련하여 운용
  - BOPEC의 첫 세가지 평가부문(Bank subsidiaries, Other subsidiaries, Parent company)은 모회사 및 그 자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의 기본적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 BOPEC의 마지막 두 평가부문인 연결수익성 및 연결자본적정성(Earnings, Capital adequacy)은 재무적 강점의 유지 및 전체 조직의 위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은행지주회사의 확정등급은 우선 BOPEC의 5개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다음으로 5개 항목 전체에 걸친 재무성과(Financial composite)와 경영능력(Managerial composite)에 대해 다시 등급을 정함

6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진성규제

- 즉, 은행지주회사의 최종 평가등급은 BOPEC의 5개 항목과 재무, 경영에 대한 2항목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결정됨



○ 은행자회사(Bank subsidiaries) 평가

- 은행 자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부문은 다음과 같음
  - 선도 자회사은행(the lead subsidiary bank)의 CAMELS 평가부문 등급 사용
  - 은행자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개별은행의 자산규모에 기초를 둔 모든 자회사 은행에 대한 CAMELS 평가부문 등급을 가중 평균

○ 기타 비은행 자회사(Other subsidiaries) 평가

- 기타 비은행자회사의 평가등급은 비은행자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수익창출능력과 영업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중점 고려함
  - 여신취급자회사의 경우 총자산 대비 가중부실여신의 비중(여신 비취급자회사의 경우에는 문제출자자산의 비중)
  - 모회사 및 비은행자회사의 대손충당금과 연결기준자기자본 대비 가중부실여신의 비중

- 경영진의 건전한 자산관리, 관련법규 및 규제 준수 등 영업통제 능력 및 경영관리능력
  - 비은행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은행에 부당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
- 일반적으로 기타 비은행 자회사의 자산이 은행지주회사 연결자본금의 천만달러미만이거나 또는 동 금액의 5%를 초과할 때마다 기타 비은행자회사를 평가하여야 함

○ 모회사(Parent company) 평가

- 모회사 평가부문은 부채와 기타 고정된 채무를 제공할 모회사의 능력, 비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모회사 자산의 현금화 시 은행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정도, 현금흐름 및 법과 규정의 위반에 초점을 두고 모회사의 재무상황을 평가함
- 분석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회사가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적절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한 은행지주회사의 능력에 분석의 초점이 두어짐
- 모회사 평가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모회사의 부채 규모와 구성, 그로 인한 현금흐름 수요
  - 모회사 채무의 만기일과 그들이 자금조달하여 투자한 금액의 만기일간의 차이
  - 비계열회사(nonaffiliated companies)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은행자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산을 현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 경영진의 유동성 및 현금흐름 수요에 대한 계획 능력과 단기자

## 6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금시장에서 변화하는 조건에 대응하는 능력

- 합리적인 조건으로 장·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모회사의 능력 및 확실한 신용조달처의 존재
- 모회사가 받는 경영관리 요금 또는 서비스 요금의 합리성
- 부채상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영업성과
- 모회사와 자회사 전반에 대해 수립된 지주회사정책 및 관련법과 규제에 따른 감독 및 모회사 경영진의 통제능력

### ○ 연결수익성(Earnings - consolidated) 평가

- 연결된 수익창출능력을 기초로 하여 평가되는 연결수익성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조직의 총연결자산이 1억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등급을 부여
- 당기순이익의 절대규모와 적정성을 나타내는 양적 평가와 지속적인 영업수익의 창출능력, 일시적인 주식투자 손익, 세금 등을 반영하는 질적 평가의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됨
- 수익성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짐
  - 연결기준자산이익률, 과거 수익 추세 및 동종그룹간의 비교
  - 다음을 반영한 수익의 정성적 평가: (i) 일시적인 손익 또는 비정상적 세금 효과에 의존하는 정도, (ii) 자산포트폴리오의 상황과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고려한 손실충당금의 정도
  - 적절한 대손상각 및 공적 신뢰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제공하는 능력
  - 위험 구조와 자산의 질적 측면에서 경영진이 실현가능한 수익모델을 계획하는 능력

- 현재의 위험 구조와 보유자산의 특성에 의해 내포된 수익의 전망
- 최근의 성장 정도 및 계획된 자산 성장성에 비추어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익창출능력

○ 연결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 consolidated) 평가

- 연결자본적정성 평가 역시 은행지주회사 조직의 총연결자산이 1억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등급을 부여
-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규모가 지주회사 전체의 위험, 예상치 못한 손실, 지주회사 전체의 차입금 등에 비추어 충분한지 등을 주로 평가
- 자본적정성 분석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해야 함
  - 연결기준 총위험자산 대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비율(the relationship of consolidated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as reflected in (a) the ratio of tier 1 capital to total risk-weighted assets, and (b) the ratio of total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 자산건전성 및 지주회사업무 관련위험으로부터 도출된 자본요건
  - 기본자본(Tier I)에 대한 연결기준 부채 비율
  - 자본구조에서 장기부채의 의존 정도
  - 자회사에 투자할 때 모회사의 부채 사용정도
  - 자본적정성의 추이
  - 기본자본(Tier 1)과 총자산 비율에서 비은행업무의 특성과 규모

## 6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 재무성과(Financial composite) 평가

- 재무성과(Financial composite) 평가부문은 은행지주회사조직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기초를 두고 5가지 평가등급을 고려

### ○ 경영능력(Managerial composite) 평가

- 경영능력(Managerial composite) 평가부문은 모회사의 경영진과 은행 및 비은행 자회사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반영하여 관리 능력을 평가하며, 다른 평가항목과는 달리 3가지 평가등급으로 나뉨

## 6)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에 대한 ROCA 평가제도

### ○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에 대한 검사는 종래부터 ROCA 라고 불리는 리스크관리 중심의 검사방법이 사용되어 왔음

- ROCA 평가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내부운용통제(Operational control), 규제준수(Compliance), 자산내용(Asset quality)의 4개 분야에 대하여 각각 5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짐.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AMELS제도에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가 도입됨에 미국내 은행의 검사에도 ROCA의 개념이 적용되게 되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 ○ ROCA에 의한 검사내용

- 미국내 지점의 검사 및 평가

- 위험관리, 내부운용통제, 규제준수, 자산내용의 각 항목에 대하여 각 5단계의 평가를 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점의 경영실태를 다시 5단계로 평가함

— 미국 전지점의 종합평가

- 복수의 은행감독관청에 의한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종합평가는 최종적으로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종합하여 평가함

○ 해외 모은행에 대한 평가

- 외국에 존재하는 모은행이 미국내의 지점경영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의 기준이 종합평가의 결정에 추가되는데, 이를 SOSA(Strength Of Support Assessment) 평가라고 함

- SOSA 평가에는 A부터 E까지의 5단계 등급이 있음

- SOSA 평가는 다음의 두 개의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

- 첫 번째 기준은 외국은행의 미국내 영업에 있어 미국의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그 나라의 감독 및 규제의 적합성, 외국 모은행이 미국내 은행에 지원 정도 및 위험전이 정도를 포함한 외국은행의 재무조건 및 그 나라의 외부 요인에 기초로 함
- 두 번째는 외국은행이 미국내 영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와 준법절차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함

## 7) 소비자보호법과 지역재투자법에 의한 적격검사

### ○ 소비자보호법의 준수여부에 관한 검사

-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준수에 대한 검사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보호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공정하게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 은행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했는가, 공익적 입장에서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측면에서 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준수 여부의 평가는 최고 1등급부터 최저 5등급까지 5단계임.

### ○ 지역재투자법(CRA) 준수에 대한 검사

- 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는 별도로, 4개의 금융감독관청이 모두,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검사와 소비자보호법 준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함
- CRA 검사의 목적
  - 해당 금융기관이 일련의 CRA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 지역사회전체의 여신수요 및 중·저소득층의 여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이 경주한 노력의 정도 및 그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임
- CRA 검사 등급은 우량(outstanding), 양호(satisfactory),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불량(substantial noncompliance)의 4단계 평가 등급으로 나뉨

- CRA 검사는 1989년 금융기관개혁법(FIRREA)에 의해 개정되어, 은행감독관청 검사의 평가 등급 및 사정함목별 평가서의 공개가 의무화되었음
  - 이는 금융기관의 일반 출입검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비공개인 점과 차이를 가짐
- CRA 검사의 평가에서 양호(satisfactory) 이상의 등급을 받지 못하면, 연방준비이사회(FRB)로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받지 못함

## 2. 건전성규제

### 가. 자기자본규제

#### 1)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 모든 은행들은 신설 인가시, 최저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연방준비이사회는 신설은행에 대하여 기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초창기의 자기자본비율규제기준
  - 1981년 후반, 연방은행감독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식으로 자기자본비율규제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함
    -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

## 68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 : 자본금, 각종준비금, 잉여금 등)과 총자산 대비 총자본(Tier 1 + Tier 2: 기본자본에 우선주와 후순위채 포함)의 최저비율을 정함
- 초기의 자기자본비율규제는 regional bank와 community bank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저비율은 전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5%에서 5.5%, 후자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6%로 정해짐
- 초기에는, 가장 규모가 큰 17개의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1983년부터 이들 초대형은행들에게도 regional bank에 적용된 것과 같은 1차자본·총자본비율기준이 적용되었음

### ○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의 도입

- 1988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의해 BIS 제1차 규제기준 도입
  - 위험자산방식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
  - 동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Tier 1 + Tier 2)비율을 8%,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비율을 4%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 기본자본을 총자산의 4%(레버리지비율)이상 유지하도록 규제
- 1997년말 BIS 제2차 규제기준 도입
  - BIS 제1차 규제기준에 시장위험을 추가
  - 분자의 자기자본에 Tier 3(단기후순위채)을 추가하고, 분모의 위험자산에 시장위험 항목을 포함시킴
  - 시장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모형 이외에, 내부모형의 사용을 인정

-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법은행 및 주법은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계산
  - 금융자회사 투자금액을 국법은행 및 주법은행의 자기자본과 총자산에서 제외하며 금융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은행의 연결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함
  
- 증권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충분한 자기자본(strong capital) 유지의무를 부과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이하이고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자기자본의 부족분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준비이사회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가 증권자회사에 신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증권자회사의 처분을 명령

## 2)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 미국의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15c조에 의거한 “브로커-딜러에 대한 필요순자본”은 브로커-딜러에 대한 최소한의 재무건전성 요건임
  - 순자본규칙(net capital rules)의 주된 목적은 등록된 브로커-딜러의 파산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실이나 지급지연으로부터 고객과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규칙은 등록된 브로커-딜러가 최소한의 순자본액 이하로 떨어질 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청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

## 7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구함

#### — 기본계산방법(basic method)하에서의 순자본규칙

- 기본계산방법(basic method)하에서는 브로커 딜러는 순재산을 총부채의 6과 2/3% 또는 25,000달러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일반적으로 총부채는 브로커-딜러의 담보되지 않은 차입의 대부분을 포함하므로 총부채규제는 회사의 레버지리를 제한하게 됨

#### — 대체계산방법(alternative method)하에서의 순자본규칙

- 대체계산방법(alternative method)하에서는 증권거래법 15c3- 3a에 따라 계산된 고객관련 수취채권의 2% 또는 10만불을 초과하는 순자본을 유지해야 함
- 이는 고객관련 수취채권에 대한 최소한의 순자본요건을 둠으로써 자본금이 부실한 회사의 고객관련 사업확장을 제한하게 됨

#### — 브로커-딜러가 유지하도록 요구받는 최소자본금은 다음 중에서 큰 쪽을 기준으로 설정됨

- 브로커-딜러가 유지하는 총부채(aggregate indebtedness)의 수준 (브로커-딜러의 현재 부채에서 예외항목들을 차감한 것)
-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15c-3(대체적 방법)에 의거 산정된 고객관련 미수금(총차변항목) 또는
- 당해 브로커-딜러가 선물거래인으로 등록된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15c3-1의 방법과 CFTC 규정 1.17(a)에서 정의된 상품고객자금의 4% 중 큰 쪽

- 증권거래위원회는 모든 등록된 브로커-딜러에 대하여 순자본을 산정하고 항상 그 적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함

- 총부채법에 의거하여 브로커-딜러는 그 총부채가 조정순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만일 조정순자본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이
  - 1/15을 초과하면 브로커-딜러는 모든 유가증권거래가 제한 받게 되고,
  - 1/12을 초과하면 브로커-딜러는 영업 축소를 요구받게 되며,
  - 1/10을 초과하면 브로커-딜러는 영업확장이 금지될 수 있음

#### 나. 자산건전성규제

- 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 여신운용지침(lending policy) 검토·평가
  - 여신운용절차(lending procedure)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 개별 여신의 검사 및 평가
  -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평가
  
- 여신운용지침 및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로 점검함
  - 차입자로부터 재무제표 및 기타 여신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동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내부 감

## 7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시체제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은행경영진이 여신운용지침 및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여신담당자의 업무수행내용이 여신심사부 및 내부 감사팀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사·평가되는지 여부

○ 개별 여신의 적정성 심사절차는 개별여신에 대하여 검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문제여신과 부실징후여신을 판별함

- 건전성 평가결과에 따른 개별 여신은 정상(pass), 요주의(special mention),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추정손실(loss)로 분류됨
  -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은 문제여신임
  - 요주의 여신은 손실액이 현저히 드러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신용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높은 여신임

○ 예금금융회사의 계열 증권자회사에 대한 일중 여신(intra-day extensions of credit) 취급시 우대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및 저축기관 또는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은 같은 계열관계에 있는 증권자회사에 대해 결제자금 등의 목적으로 일중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market terms)에 의하여야 함(연방준비제도법 제23B조)
- 이는 은행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증권자회사를 우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외국은행의 계열 증권자회사에 대한 여신 등 규제사항
  - 금융지주회사인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이 계열 증권자회사에 여신을 공여하거나, 동 증권자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한도 범위내에서 시장가격(market terms)에 의하여야 함(연방준비제도법 제23A조, 제23B조)

#### 다. 거액신용공여규제

- 신용리스크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 등을 통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함
  - 동일인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5%이고 즉시 현금화될 수 있는 유동성 높은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 편중여신에 포함되는 여신이 양질(good quality)이라 하더라도 편중여신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편중여신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 산업별, 지역별 등 여신운용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토록 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자원의 균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함

**7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IV. 기타 국가의 금융감독 및 건전성규제

---

1. 일본
2. 영국
3. 독일



## IV. 기타 국가의 금융감독 및 건전성규제

### 1. 일본

#### 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허용

- 1997년 3월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 추진계획의 재개정'에서 지주회사 해금의사를 밝히고, 동년 6월 독점금지법 개정법안을 제출하여 동년 12월 17일부터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됨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 관련업법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7년 10월 9일 금융지주회사 해금을 위한 법률안을 작성하였고, 동년 12월 5일 '지주회사의 설립 등의 금지 해제에 따른 금융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1998년 3월 11일부터 시행됨
  -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외국환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금융관련 지주회사의 감독
  - 일본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재생위원회 산하의 금융청 (FSA : Financial Services Agency) 장관의 감독을 받음
  - 금융자회사를 산하에 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도 금융청의 감독하에 있음

## 나. 금융관련 지주회사의 설립규제

-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일본에는 법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만 존재
  
- 은행지주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재생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 이는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경영관리방식이나 은행지주회사그룹 전체의 재무상황 등이 은행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금융재생위원회는 자기자본 충실도, 경영능력, 은행지주회사의 수지전망 등 은행지주회사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인가
  - 일정거래 또는 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해, 은행을 자회사로 가지는 지주회사가 된 회사에 대해서는 사후인가 등의 특례를 정함
  - 금융재생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을 자회사로 하여 지주회사가 된 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는 금융청(FSA) 장관이 감독함
  - 동일 그룹내의 자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형제 자회사인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청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입검사를 함
  -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금융청장은 보험회사의 업무가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또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출입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수행함

- 증권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한 인가절차는 필요 없음. 증권회사는 자사의 과반수 주주 이상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로부터의 신고가 행해지게 됨
  -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증권지주회사에 대해 보고·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 다. 업무영역규제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
  -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것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영위하도록 각 업법에 규정되어 있음
  - 증권지주회사에 관해서는 그러한 제한은 특별히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회사의株式이 회사 총자산의 50%를 넘는 회사」라는 지주회사의 정의에 의해 자회사의 경영관리 이외의 업무를 폭넓게 경영하는 회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 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여타 금융업에의 진출은 허용하나 비금융 업종에의 진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증권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타 금융업 및 비금융업종까지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은행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일본 은행법의 은행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받음
  -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8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보다는 상호보험회사 (mutual insurance company) 형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중간 지주회사형태로 여타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진출을 허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허용되지는 않았음
- 상호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 상호간 이익을 목적(비영리)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일의 상호보험조합이 그 효시임

○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 은행
- 장기신용은행, 외국환은행을 포함
- 증권전문회사
- 보험회사
-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
- 은행업 또는 증권업에 종속, 부수, 혹은 관련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회사
- 금융관련업무를 하는 회사
-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회사(벤처캐피탈의 출자처, 또는 벤처사업)
- 특징
  - 은행지주회사가 보험회사, 보험업을 하는 외국의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97년 12월의 은행지주회사해금과 관련된 개정은행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98년 6월 성립된 개정

은행법에는 포함됨

- 종래 은행이나 증권회사 자체에서 경영하는 것을 인정해 왔던 부수업무에 추가하여, 자회사에서 경영하는 것을 인정해 온 「고유업무에 종속하는 업무」와 투자신탁업, 투자고문업 등 「금융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도 지주회사산하의 자회사를 통하여 경영하는 것이 인정됨
- 부동산업·제조업의 일반사업회사는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로서 경영할 수 없음
-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상회사(은행업에 종속, 부수, 또는 관련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등은 제외)를 자회사로 하려고 할 경우에도 사전에 금융재생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함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 증권전문회사
-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
-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
-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
- 보험업 또는 증권업에 종속, 부수, 혹은 관련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회사
-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회사로서 총리령이나 대장성령으로 규정한 회사(벤처회사)

## 8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 특징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대상회사로 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보험업법 제271조6호의 6항에서 이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장기신용은행지주회사가 됨으로 각각 은행법과 장기신용은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

### ○ 증권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 증권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나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와는 다르게 증권업법, 즉 증권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증권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도 은행·보험지주회사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음
- 증권지주회사의 지회사에 은행, 보험 자회사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관련 자회사만 인정됨. 만약 은행이 자회사로 있으면, 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자회사에 은행이 없고 보험회사가 있으면 보험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됨
- 증권지주회사의 지회사에 은행, 보험 자회사가 없는 경우 : 증권자회사 이외에 일반사업 자회사도 허용됨

### ○ 99년 4월에 은행과 증권자회사간의 업무차단벽(firewall)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 순자산 5천억엔 미만인 기업의 사채발행시 모은행이 동사의 주거래 은행인 경우 증권자회사는 주간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제를 철폐함
- 모은행과 증권자회사의 점포공유 제한 철폐

- 모은행과 증권자회사가 공일 거래선 방문금지 철폐
- 고객과 사전에 포괄합의하면 개별동의가 없어도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모자회사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완화
- 그러나, 용자의 담보로서 자회사를 통한 증권거래를 강요하는 경우나 유가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은행이 용자해주는 back finance 금지 등 불공정거래나 이익상충방지 목적의 최소한의 규제는 유효함

## 라. 소유규제

###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제한

-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할 수 없는 회사(제조업이나 부동산업 등 일반사업회사)에 대해서는 개정은행법 제52조8호의 주식보유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주회사 자체 및 자회사는 합산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규제가 부과됨(합산 15% rule)
- 15%를 넘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경과기간을 마련
  - 이는 은행지주회사가 일반사업회사로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은행자회사 및 금융자회사들의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은행예금자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 취지임

### ○ 은행의 주식 보유제한

- 은행법 제16조3호를 적용하여 은행이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는

8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일반사업회사의 주식소유를 발행주식의 5%, 보험회사의 경우는 보험업법에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은행이 일반사업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여 은행자회사들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은행의 자회사 범위제한을 일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철저히 금지하기 위함임

○ 독점금지법 제11조의 금융회사의 5% 주식보유제한 규정과 은행법상의 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의 5%(또는 합산 15%) 주식보유제한 규정과의 차이점

- 독점금지법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타회사의 주식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목적은 금융회사에 의한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임
- 이는 경제력 집중 및 경쟁제한적인 주식소유를 금지하기 위함임
- 제11조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나타내며, 은행과 증권회사는 상한 5%, 보험회사는 상한 10%의 규제를 받음
- 제11조의 상한규정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한 기업의 주식보유를 규제하는 것임
- 제11조의 규제대상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처럼 일반사업회사의 주식보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내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들의 주식보유를 규제대상으로 함

○ 일본의 경우 은행 소유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은 없음

## 마. 건전성규제

### 1)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규제

#### ○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규제

- 은행지주회사그룹의 재무상황 등이 은행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재생위원회 및 대장성 대신은 연결자기자본비율의 기준 등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기자본의 적정성 등 경영의 건전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신설함(일본 개정은행법 제52조9호)
-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연결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위해 은행법시행령 및 고시에서 연결자기자본비율 계산방식을 정함
-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자기자본비율 기준
  - 해외영업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8% 이상 유지
  - 해외영업지점을 갖고 있지 않는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4% 이상 유지
- 자기자본비율제도와 관련해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환경 및 금융기술의 발달에 부응하여 규제의 합리성 및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부단히 연구·제시함.
  - 일본의 개정은행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연결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항목들인 위험자산 및 자기자본의 인정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인 개정이 이루어짐

○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의 범위

- 위험가중자산의 총액은 신 BIS 기준과 연결베이스에 의해, 신용위험에 대응한 자산의 가중총합과 시장위험상당액에 12.5배한 액수를 더하여 산정
- 은행대출자의 예금 상계(netting)를 인정
  - 종전에는 은행에서 일반회사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상당액에 1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었음
  -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대출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액만큼의 대출금 상쇄를 인정하여, 대출잔액 부분에만 위험가중치가 부과됨
-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경감
  - BIS 자기자본규제를 받는 OECD국가 증권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회사 보증채권의 위험가중치를 종래의 100%에서 20%로 낮춤
- 자산유동화 증권 등의 취급규정 정비
  - 은행이 대출채권의 회수불능위험을 투자자에게 전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V)를 이용한 채권유동화 등의 방법을 최근에 많이 이용하기 시작함
  - 채권유동화의 경우,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 등으로 나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험의 정도가 높은 후순위증권을 은행이 다시 매수하게 됨
  - 이 경우에는 채권유동화를 통한 채권대출위험의 전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매수한 후순위증권의 규모에 따라 오히려 위험이 채권유동화전보다 더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이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위험 회피를 인정해서는 안됨
- 개정은행법에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라, 해당 은행이 매입한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규모가 해당 대출채권 유동화 총액의 일정비율(국제기준의 경우 8%)을 하회하는 경우에만, 상응하는 리스크의 차감을 인정하고 있음
- 즉,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8\% - \text{해당은행이 매입한 후순위 유동화증권이 해당 총유동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times (8\% \text{의 역수})]$$
 의 비율을 해당 총유동화액에 곱하여 얻은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위험자산을 차감함

○ 자기자본의 범위

- 연결자기자본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은 제2차 BIS기준을 따라서, 기본자본(Tier 1), 상위보완자본 및 하위보완자본(Upper Tier 2, Lower Tier 2), 준보완자본(Tier 3)으로 이루어짐
- 부동산 재평가 상당액을 상위보완자본(Upper Tier 2)에 추가함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액과 재평가직전 장부가액간 차액(재평가 상당액)의 45%를 상위보완자본으로 인정
- 회사 등 을 통해 발행한 우선증권(우선주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부채성 증권) 등을 기본자본(Tier 1)에 추가함
  - 자산유동화전문회사형태의 연결회사가 발행한 우선증권 등을 기본자본(Tier 1)에 추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때 비누적성, 영속성 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함

<표 IV-1>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해외영업지점을 가진 은행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해외영업지점이 없는 은행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시정명령
	제1기준*에 의한 연결자기자본비율	제2기준**에 의한 연결자기자본비율	
	8%이상	4%이상	시정조치 없음
제1구분	4%이상 8%미만	2%이상 4%미만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경영개선계획이 제출 및 실행을 명령
제2구분	2%이상 4%미만	1%이상 2%미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 확충 조치에 관계된 명령 ①자본의 증가를 위한 계획의 제출 및 실행 ②배당과 임직원 상여금지 ③총자산의 축소 또는 증가의 억제 ④은행을 제외한 자회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제2구분2	0%이상 8%미만	0%이상 1%미만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자본의 확충 및 합병의 방법과 은행자회사 주식처분 등의 조치 중에 선택하도록 하여, 그 선택에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
제3구분	0% 미만	0% 미만	은행자회사 등의 주식처분

\* ) 제1기준은 연결베이스에 의한 국제통일기준(은행법시행규칙 제34조의 18제3항)

\*\* ) 제2기준은 연결베이스에 의한 국내기준(은행법시행규칙 제34조의 18제4항)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자기자본비율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가 취해짐
- 은행지주회사에 해외영업망이 존재하는가에 의해, 적기시정조치가 행해지는 연결자기자본비율기준이 다름.
- <표 IV-1>에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각 단계별 기준과 명령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2) 증권회사의 건전성규제

○ 증권회사의 건전성규제

-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 연4회(3월,6월,9월,12월)의 일반열람을 의무화하고, 증권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단계를 명확히 규정함
-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은 1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자기자본규제비율이 140%이하인 경우 : 이 기간에는 고정화되지 않은 자기자본, 시장위험상당액, 거래상대방위험상당액, 기초적 위험상당액, 자기자본규제비율을 매영업일 산출해야 함
- 자기자본규제비율이 120%미만인 경우 : 업무방법의 변경 및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자기자본규제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업무정지명령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계속 100% 이하이고, 경영상황의 회복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3) 보험회사의 건전성규제

○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기시정조치 내용

- 보험금 등 지불능력 충실도 표시비율이 200% 미만인 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실시
  - 지불능력 충실도 표시비율이란 대형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표시하며, 자기자본과 자산평가의 등 잉여금성격의 계정을 추정위험액으로 나눈 값임
- 표시비율이 200% 미만인 회사를 0%미만, 0% 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실행명령'부터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까지의 행정처분
- 표시비율이 0~200%인 회사 중에서도 시가평가된 자산규모가 부채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명령의 즉시 발동이 가능
- 표시비율 0%미만 회사 중 시가평가된 자산이 부채액을 상회하거나 상회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 또는 2등급에 속한 조치 가능

### 4) 금융회사의 건전성평가기준의 마련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 및 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을 준용한 감독 규정을 둠
  
- 은행 감독 및 건전성 지도 강화를 위한 '금융재생 토달플랜'을 98년 7월 수립

— 주요은행에 대한 집중 검사

— 검사·감시·감독을 위한 체제 강화

- 외국의 노하우를 도입한 검사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정비
- 모니터링에 필요한 컴퓨터시스템 정비
- 금융청의 검사·감시·감독체제를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대폭 확충하는 등 계획적인 체제 강화

— 투명성 및 정보공시의 향상

- 98년 3월 결산기부터 미국의 SEC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실채권의 공시 실시
- 99년 3월 결산기부터는 전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결베이스로 미국의 SEC기준과 동일한 공시를 실시하고 위반시 벌칙 부과
- 국제적 회계·공시기준 도입의 일환으로 금융상품의 시가회계도 2001년 3월 결산기부터 도입 계획

○ 금융기관 건전성 종합평가기준 도입 (99년 1월)

— 미국의 CAMELS와 유사한 수익성, 유동성 등 경영전체 평가기준 마련

## 바. 거액신용공여규제

### 1) 주요내용

#### ○ 거액신용공여규제의 의의

-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특정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등의 신용공여가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
- 은행 또는 은행그룹의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은행(또는 은행그룹)의 자기자본에 근거하여 일정 비율이하로 제한함

#### ○ 기본 내용

##### — 여신측 합산대상의 범위

-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회사를 포함한 은행그룹내의 관련회사로부터의 모든 신용공여 등을 합산하여 규제
- 은행은 해당은행 자신과 여신측 합산대상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 합계액을 상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여신측 합산대상회사가 개별채무자의 신용공여 규모를 해당은행에 보고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고객의 승낙이 없다면 여신측 합산대상회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게 됨
- 특히, 은행 이외의 여신측 합산대상회사에 증권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차단벽 관련조항인 비공개정보의 수수행위 금지조항을 위배하게 됨
- 따라서, 은행법의 거액신용공여규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모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에 고객의 신용공여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증권회사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명령 제12조7호)

— 수신측 합산대상의 범위

- 여신측으로부터의 수신측 합산대상의 파악가능성을 고려하여 상  
법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회사 집합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규제를  
적용

— 신용공여 개념의 확대

- “대출금”, “채무의 보증”에 더하여 “출자” 등의 신용공여 유형을  
추가

— 은행법 제13조의 규정

## 2) 규제비율

○ 은행에 대한 규제

- 동일인 여신규제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상한
- 동일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규제는 은행  
자기자본의 40% 상한

○ 규제비율에 대한 국제비교

- 미국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는 15%, 시장성이  
높은 담보에 의해 전액 보호받는 경우에는 25%가 상한임
- EU 지침(EU directive)에서는 25%를 상한으로 하고,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800%를 초  
과해서는 안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차주의 경우에는 25%, 동일인에 대해서

**9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는 20%의 상한규제가 2000년 1월부터 도입됨

**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거액신용공여규제**

○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동일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규제(개정은행법 제52조6호의 규정)

— 규제비율, 순자본의 계산방법, 수신측 합산대상범위, 여신측 합산대상범위 등은 기본적으로 은행그룹에 대한 합산신용공여규제 규정과 동일함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신용공여에 “출자”를 포함하게 되면, 은행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므로 이를 제외

## 2. 영국

### 가. 감독체계

- 통합적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성립
  -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of 1986)에 의거 재무부(Treasury)·증권투자위원회(SIB: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자율규제기구(SROs) 등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분담하여 왔음
  - 그러나, 금융업무영역이 불명확하여 규제의 중복 및 감독의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규제기능이 강화된 단일 금융감독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97년 10월 FSA가 설립됨
  - FSA가 모든 금융업무의 감독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규제체계에 대한 정비 필요성 대두
    - 1986년에 제정된 금융서비스법을 전면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을 발표
  
-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그룹의 주 감독기관은 감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업무분석(predominant business test)을 통하여 선정하며, 금융그룹 외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개별감독기관(solo supervisor)에 의해 수행됨

— 주업무가 은행업무인 그룹

- 복합그룹담당국(Complex Group Division)이나 은행·주택금융조합 담당국(Bank and Building Society Division)에서 감독하며, 주택금융조합의 경우는 은행·주택금융조합 담당국(Bank and Building Society Division)에서 담당

— 주업무가 투자업무인 그룹

- 복합그룹담당국(Complex Group Division)이나 투자업무국(Investment Business Division)의 관련과(department)에서 담당

— 주업무가 보험업무인 그룹

- 보험·공제조합담당국(Insurance and Friendly Societies Division)에서 담당

— 대형금융그룹에 속하지 않는, 복수의 인가를 받은 개별회사의 경우에도 주감독부서가 해당 금융회사의 감독을 책임짐

- 예를 들어, 대형금융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의 행위가 투자업무국의 감독을 받을지라도 주감독부서는 보험·공제조합담당국이 됨

— 해당회사의 업무가 변화하여 주업무가 바뀌게 된 경우나 합병을 한 경우, 주감독부서의 변경 문제가 검토되며, 이 때 주감독부서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FSA는 관련 그룹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금융그룹의 감독

-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그룹의 경우, 은행의 자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함

- 은행 및 증권회사의 거액여신공여, 보험사의 자산가치평가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과 관련하여 규제
  - 자기자본비율규제, 거액여신한도 등 광범위한 건전성규제를 부과하며, 특히 은행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이들 모든 규제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됨
  - 은행 및 증권회사가 주도하는 금융그룹의 경우에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연결기준으로 하고, 거액여신한도는 비연결기준으로 적용함
    - 동 연결기준 적용시 보험회사를 제외시키며, 보험회사 및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출자분을 공제함
    - 보험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별로 자기자본 및 자산편중 관련 규제
  - 연결 및 비연결 기준으로 경영진의 적합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감독의 실시
  - 통합감독기구의 감독대상이 아닌 자회사에 대한 정보취득 권한은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인가문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회사에 대해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감독당국에 없음
  - 그룹차원의 영업활동(Operational Integration)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FSA는 운용자금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그룹차원의 영업활동에 대해 제한을 가하지 않음
- 지주회사는 법적으로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s), 보험지주회사(insurance holdings), 혼합지주회사(mixed activity holdings)로 구분됨

- 지주회사 자체는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FSA는 자신이 인가한 금융회사에 대해 연결기준의 감독권을 행사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결기준(보험사 제외)의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며,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를 적용할 예정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결기준의 거액신용공여한도 적용
  - 감독대상이 아닌 지주회사의 영업정지나 취소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또한 지주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감독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지주회사에 대한 직접 검사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지주회사 자체는 감독당국의 인가대상이 아님
    - 자회사에 대한 인가권 행사를 통하여 금융그룹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 지주회사에 대한 정보 취득 가능하며 감독대상인 자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정보 취득이 가능함
  - 주주의 적격성 등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 가능
  
- 복합금융그룹(complex financial conglomerates)의 은행업과 증권·선물업(SFA regulated business)에 대한 감독을 통합함
  
-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은 가능하나, 보험 관련 업무는 보험사에 의해서만 영위 가능함
  
- 은행의 소유제한
  - 은행의 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SA에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를 해야 함

- 15%(minority shareholder), 50%(majority shareholder) 및 75%(principal shareholder) 초과취득시 각 단계별로 사전승인이 필요
- 5%~15% 취득할 경우 사후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나. 설립규제

-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특별히 제한은 없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금지함
  
- FSA는 여러 감독기관이 행사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감독 업무를 통합 수행함
  - 공인회계사, 법무사, 보험중개인 등과 같은 투자업무 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가업무도 담당
  
- 영업 인·허가와 관련한 이원적 규제
  - 일반적 금지사항 (General Prohibition : 제7조)
    -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를 감독당국의 허가없이 영위할 수 없음
    - ‘규제대상행위’의 범주
      - (i) 자기매매(dealing in investments)
      - (ii) 투자중개행위(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on behalf of

others)

- (iii) 예금수취행위(accepting deposits)
  - (iv) 자산보호관리(safeguarding or administering assets for another person)
  - (v) 자산관리(managing assets on behalf of another person)
  - (vi) 투자자문행위(giving advice on the buying, selling, subscribing for or underwriting of an investment or about the exercise of any right conferred by an investment to buy or sell, subscribe or otherwise convert an investment)
  - (vii) 집합투자수단의 설립·운영·청산(establishing, operation or winding up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viii) 전자결제(sending, or causing to be sent, instructions by means of a computer based system as to the transfer of investments : this element would cover computer-based clearing systems such as that operated by CREST)
- 이에 관한 허가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해 FSA가 허가하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 영업종류의 인가

- 허가업자가 FSA의 별도의 명시적인 허가(permission)없이 '규제 대상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금지함
- FSA가 정보 및 서류제출 요건 및 절차와 같은 인가요건 등의 인가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규정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인가 취소 및 개입권행사가 가능함

#### 다. 건전성규제

- 유럽경제지역(EEA)에서는 자회사의 국내외 소재와 관련 없이 자회사를 가진 모든 은행은 연결방식으로 8%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연결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의 가치는 연결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며 이는 비금융 자회사나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됨
  - 만일 동일 그룹내 보험회사가 개별 보험감독당국이 부과한 필요 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분은 은행그룹의 연결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될 수 있음

### 3. 독일

#### 가. 감독체계

##### ○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 독일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그룹은 원칙적으로 은행감독 규정이 적용되며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은 은행감독청에서 행사

- 금융그룹은 하나의 지배금융기관과 여러 종속 금융기관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은행감독관청에 증명해야 함

— 은행감독은 연방재무성과 연방은행감독원에 의해 수행됨

- 독일 연방은행 및 지역을 대표하는 주중앙은행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

— 보험과 유가증권의 매매는 각각 연방보험감독원과 연방증권감독원에 의해 감독을 받음

- 연방보험감독원은 보험감독법에 의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감독함
- 연방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거래를 방해하거나 증권시장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 및 규정을 제정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

방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사전신고

- 지분율이 20%, 33%, 50%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와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금융업간 상호진출 가능

- 은행은 자체적으로도 은행, 증권, 투자업을 동시에 영위 가능하며 보험업은 자회사로만 진출 가능함
-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한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

## 나. 건전성규제

### 1) 자기자본규제

○ 금융기관들은 채권자들에 대해 상시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적정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존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자기자본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감독청은 소유주 또는 출자자의 자금인출, 이익배당 또는 여신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 가능함

○ 금융그룹의 경우에도 적절한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하며 개별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이 적용됨(은행법 제10a조 제1항)

104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최저 필요 자기자본의 산정

- 금융기관의 필요 자기자본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합기준 I, II, III (Grundsatz I, II, III)을 제정함
- 통합기준 I (Grundsatz I)은 금융기관 및 금융그룹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대한 위험자산 또는 필요자기자본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임
- 통합기준 II와 III (Grundsatz II, III)은 금융기관 및 금융그룹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위험자산 또는 필요자기자본 산정 규정임

○ 통합기준 I (Grundsatz I)의 내용

- 위험자산의 산정방식은 기본구조에 있어서 단순한 양적 측정방법을 사용
  - 금융기관의 관리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개별위험 분산 업무에 재량권을 주기 위함임
  - 신용위험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반영되거나 부외항목상의 여신자산이 안고 있는 위험의 정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100%, 70%, 50%, 20%, 10%, 0%)가 부여되어 산출됨
  - 시장위험의 경우, 연방은행감독원은 표준방법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체 개발된 내부모형의 사용도 허용됨
- 신용위험의 경우, 각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된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최소한 8%이상 되어야 함
- 금융그룹은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기관간 서로 다른 시장위험 항목을 상계해서 위험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음

○ 통합기준 II (Grundsatz II)의 내용

-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기자본의 보유와 함께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지불능력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함
- 통합기준 II는 금융그룹 또는 개별 금융기관이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규정임

2) 거액여신규제

○ 독일 감독규정상의 거액여신은 동일인에 대한 여신총액이 금융기관 필요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임

- 그러한 여신은 연방은행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연방은행은 중요 보고사항에 대해 연방감독원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동일인에 대한 거액 여신총액은 은행 필요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은행 전체 거액여신의 총액 한도는 은행 필요자기자본의 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

- 거액여신을 공여할 경우 사전에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어야 함

○ 금융기관이나 제3자를 위해 자기매매를 하는 금융서비스 기업, 팩토리링 영업을 수행하는 금융기업, 그리고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3백만 마르크 이상의 여신을 보고해야 함

- 연방은행 여신보고국은 모든 여신보고내용을 데이터뱅크에 기록하고 여러 건의 동일인에 대한 여신은 합산해서 관리

**106**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V.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시사점

---

1. 금융그룹의 건전성규제 및 감독
2. 시사점



## V.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시사점

### 1. 금융그룹의 건전성규제 및 감독

#### 가. 건전성규제

#####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에 대한 근거조항이 금융지주회사법의 성립으로 마련됨
-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마련 중에 있음

##### ○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규제

-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자기자본규제가 시행중임
  - 현재 은행에 대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모은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방식은 금융그룹의 연결계정을 근거로 모회사인 은행 차원에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므로 이를 은행, 증권 및 보험 등 이업종으로 구성된 금융그룹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
- 증권,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의 비중이 커지거나 증권사나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경우에 이 방식은 적절하지 못함

## 110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또한, 모회사인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신용공여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거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따라서 현재의 연결방식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규제는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규제수단이라기 보다는 모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수단임

### 나. 금융그룹의 감독

-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sup>10)</sup>의 설립으로 통합적 금융감독 및 감독정보의 이업종간 공유의 토대가 마련됨
  
- 금융감독원의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체계의 정립논의
  - 필요성
    - 자회사를 가진 모금융기업에 대해 개별 재무제표에 의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개별 감독(solo supervision)방식으로는 계열회사의 부실위험파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가 곤란
    - 재벌계열 금융기업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장치가 미흡하여 그룹 대주주의 사금고화로 인한 부실우려 증대
    -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등 연결기준에 의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

10)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에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정책 입안, 금융그룹 기준 위험관리제도 기획 운영, 연결감독기준 제정 및 운영, 금융그룹 기준 경영 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그룹 감독팀을 신설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체계 구축이 필요

- 한 회사의 부실화가 그룹전체의 부실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격한 업무차단벽을 설정하고 내부신용공여 및 내부거래의 부당성 여부 등을 감시
-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래신용공여의 범위를 대출과 지급보증 외에 유가증권, 부외거래를 포함하는 총위험노출(total exposure) 개념으로 확대하고 금융그룹 차원에서 관리

○ 금융감독원의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제도의 정비방안

- 연결감독기준 제정·운용
  - 연결감독대상기업, 연결방식, 금융그룹의 건전성 평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연결감독기준(가칭)'을 제정함으로써 연결감독의 효율성 및 금융업종간 형평성 도모하고자 함
- 각 금융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관련 법·규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할 계획에 있음

**다.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및 건전성규제**

- 금융지주회사법에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및 건전성규제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

## 11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여 관련 규정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

###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도기준

-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금융지주회사의 검사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은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금융감독원은 검사상 필요한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취소권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V.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시사점 113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당해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 2. 시사점

### 가.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및 건전성규제 제도정비

-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이에 대한 감독 및 건전성규제 방안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겸업화의 수단으로도 유용성이 높아,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인 동양그룹 이외에도 여타 재벌 또는 은행그룹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금융그룹화를 추진·예정임
  - 금융지주회사법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감독 및 검사주체, 인가기준 및 절차, 업무허용 범위 및 건전성 규제방법 등 구체적인 감독 및 규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나. 효율적인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의 도입

-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유지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그룹 뿐만 아니라 금융 모·자회사로 이루어진 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BIS의 권고사항인 동시에 IMF와의 정책 협의시 이미 합의된 사항임
  - 금융그룹 감독방안은 사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도입일정을 예고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이 대

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그룹에 대한 기능적 감독(functional regulation) 방안의 수립 필요
  - 이종업종간의 겸업화가 진전되고, 금융의 탈규제화(de-regulation)로 인해 중복되는 업무영역이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에서와 같은 기능별 감독체계가 필요
  - 기존의 기관별 감독과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
  
- 금융그룹에 대한 적절한 자본적정성 평가방법의 도입
  - BIS가 권고하는 구성요소 접근방식, 위험기준 합산방식, 총차감방식 및 위험기준 차감방식 등을 대상으로 현실성있고 효율적인 방식의 선정이 필요
  
- 금융그룹 유형별 연결감독방식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의 구체적 규제 방안의 마련
  - 금융그룹 감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통합관리 대상 거래여신의 기준과 종류 및 내부위험노출에 대한 규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전 예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그룹 소속 경영진의 자격심사 근거 등을 포함하여 금융그룹 단위로 건전성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등의 정비와 함께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관련통계 보고체제의 구축

## 116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자기자본비율 기준

—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규제기준을 2단계로 분리하는 방안

- 해외영업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8% 이상 유지
- 해외영업지점을 갖고 있지 않는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4% 이상 유지

### ○ 거액신용공여 연결 규제 필요

— 은행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특정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등의 신용공여가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

— 은행지주회사 또는 은행그룹의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은행 자기자본에 근거하여 일정 비율이하로 제한함

- 현재 우리나라의 동일인 여신규제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상한
- 현재 우리나라의 동일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규제는 은행 자기자본의 40% 상한

— 여신측 합산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회사를 포함한 은행그룹 또는 은행지주회사내 관련회사로부터의 모든 신용공여 등을 합산하여 규제
- 이 경우 여신측 합산대상회사가 개별채무자의 신용공여 규모를 해당은행에 보고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고객의 승낙이 없다면 여신측 합산대상회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게 됨
- 특히, 은행 이외의 여신측 합산대상회사에 증권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차단벽 관련조항인 비공개정보의 수수행위 금지조항을 위배하게 됨

V.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시사점 117

- 따라서, 은행법의 거액신용공여규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모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에 고객의 신용공여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신용공여에 “출자”를 포함하게 되면, 은행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118**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박경서·김선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 신영욱,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논의내용과 추진과제,” *금융시스템리뷰* 제2호, 한국은행, 2000
- 한국은행, “주요국의 금융업무간 방화벽(firewall) 설치현황과 시사점,” 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조사자료, 2000
- 한국은행,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 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조사자료, 2000
- 日本 改正銀行法, 1998
- 木下信行, 『解説改正銀行法』, 日本經濟新聞社, 1999
- 藤井正志, 『金融業の 情報開示と 検査・監督』, 東洋經濟新報社, 1998
- BIS,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Joint report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1999
- BIS, "Intra-Group Transactions and Exposures Principles," (Joint Forum), 1999
- Bank Holding Company Act in US, 1970.
- FRB, *Bank Holding Company Supervision Manual*, 2000.
- FRB, "Procedures to become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Guidance Regarding the Initial Monitoring of Acquisitions and the Commencement of New Activities b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February 2000.
- FRB, "Framework for Financial Holding Company Supervision," August 2000.

**12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규제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in UK, 2000.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 new regulator for the new millennium," January 2000.

Gramm-Leach-Bliley Act in US, 1999.